

제5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11. 26.(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09-56-251)

○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안 제9조 내지 제14조, 제43조제4항 등)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양수·합병 신고, 휴지·폐지 신고, 이용약관 신고 및 사업의 폐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지(안 제9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접수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및 세부기준(안 제14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각종 신고 및 사업 폐지·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i-PIN 서비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건 - 한국신용정보 등 5개 업체 - (2009-56-252)

○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신용정보 등 5개 업체를 i-PIN 서비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함

○ 지정 내용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코리아 크레딧뷰로에 대하여 i-P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며, 기관별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함

- 각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

기 관	개선 필요사항
한국신용정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개인정보 제공 항목 추가 등 7건
한국신용평가정보	대면 확인 서류의 관리 강화 등 2건
서울신용평가정보	i-PIN 패스워드의 일방향 암호화 등 3건
한국정보인증	i-PIN 패스워드의 이메일 전송에 대한 보안 강화 등 4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비스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사항 추가 등 4건

※ 총 20개 지적사항 중 13개 항목이 현재 개선 완료됨('09. 11. 20 기준)

3)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티씨엔 대구방송(주)의 (주)대구종합유선방송 합병 - (2009-56-253)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티씨엔대구방송(주)와 (주)대구종합유선방송 간의 법인합병 인가 및 변경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합병 사유 :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합병(존속) 법인 : 티씨엔대구방송(주)

주요 사업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사업	대구 달서구, 달성군	- 이현태 28% - 김성란 22% - 이방원 20% - (주)티씨엔플러스 20%	147억원	30억원	5.8억원

- 피합병 법인 : (주)대구종합유선방송

주요 사업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
초고속인터넷사업	대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남구	- 이현태 35% - 이방원 25% - 김성란 20%	25억원	5억원	-0.6억원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주)CMB홀딩스의 (주)CMB대전 방송 주식취득 - (2009-56-254)

o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서, (주)씨엠비홀딩스가 신청한 (주)씨엠비대전방송 주식취득 인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 최대 주주 변경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사유 : 지주회사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

- 주식 취득인 : (주)CMB홀딩스

주요 사업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11개 SO의 지주회사	.	이한담 55% 이한성 40%	174억	3억	4.3억

- 주식 피취득인 : (주)CMB대전방송

주요 사업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8년)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이인석 6.8% ※ 자사주 83.3%	211억	420억	20억

5) 2009년 하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 구레케이블티비시스템(주) 등 3개 법인 - (2009-56-255)

o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구레케이블 티비시스템(주), (주)담양케이블방송, (주)장성삼계케이블 등 3개 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초고속인터넷)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기로 한 원안 내용을 의결함

○ 허가 조건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한 바 있는 ①공정경쟁을 위한 법령 준수 의무 ②이용자 보호의무 ③제3자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제공 금지 등

6) SK텔레콤(주), (주)KT, (주)LG텔레콤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건(2009-56-256)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SK텔레콤(주), (주)KT, (주)LG텔레콤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된 회선에 대해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시정조치 대상 회선 수(SK 10,485회선, KT 12,639회선, LG 22,761회선)가 많고, 구비서류를 갖추려면 가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당초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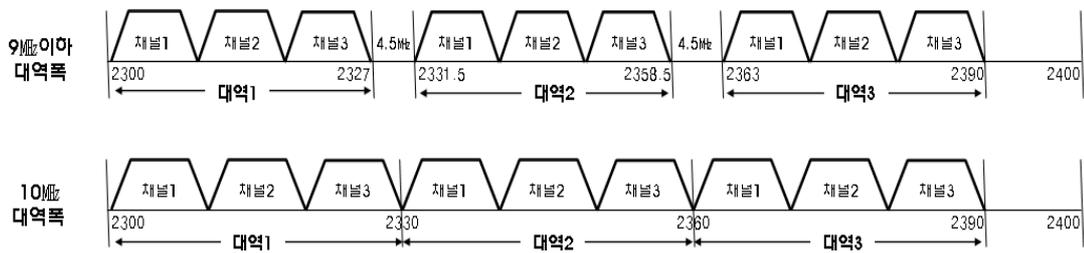
7) 휴대인터넷(WiBro)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09-56-257)

-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주파수대역폭 복수표준(8.75MHz폭 또는 10MHz폭)을 허용하기 위해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스펙트럼 마스크 제정) 2300~2390MHz대역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폭을 종전의 9MHz이하 이외에 10MHz를 추가하여 기준 마련
- 10MHz폭 스펙트럼 마스크는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해 WiMAX 포럼 표준안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

- (채널할당) 점유주파수대폭(9MHz이하 및 10MHz)에 따른 채널할당 계획을 별표로 제정



8)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KBS 등 7개 지역 지상파 DMB사업자 - (2009-56-258)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재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여 재허가하기로 한 원안 내용을 의결함

o 재허가 조건 내용

- 최초 지상파DMB 사업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2009년까지 구축계획)을 아래 표와 같이 이행할 것. 단, 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2010년 12월까지	2011년 6월까지	2011년 12월까지	합 계
한국방송공사	4개국	4개국	4개국	12개국
부산문화방송(주)	1개국 (1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5개국)
광주문화방송(주)	1개국	2개국	1개국	4개국
대전문화방송(주)	1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5개국)
춘천문화방송(주)	1개국 (4개국)	1개국 (5개국)	1개국 (5개국)	3개국 (14개국)
제주문화방송(주)	(2개국)	-	-	(2개국)
(주)대전방송	1개국 (1개국)	1개국 (1개국)	1개국	3개국 (2개국)

※ ()는 출력 100W 이하 방송보조국, 그 외는 출력 1~2kW 방송보조국

- 위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재허가 이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2012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할 것

사. 보고사항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건의에 관한 사항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역방송사의 보완책 건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건의 사항
 -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방송광고 판매제도임을 감안해 향후 제도 개선시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논의시 입법 보완을 추진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통해 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적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함
 - 지역방송 광고요금의 책정과 광고매출액 배분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 향후 방송광고 정책수립시 지역방송에 미칠 과급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또는 연구반의 운영을 검토함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직무대리)으로부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개정 내용
 - ① 방송법령상 제재의 실효성 강화(모든 사업자, 내용 및 운영영역)

평가항목	기존 규칙	규칙 개정(안)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매체별로 50~120점)	지상파TV 100점, R 90점, SO-위성 60점, 보도PP 60점, 홈쇼핑PP 120점까지 감점	매체별로 300점까지 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매체별로 30~40점)	지상파TV/R, SO-위성, PP 30점, 지상파DMB 40점까지 감점	

※ '10년 방송분('11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②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정(지상파TV, 편성영역)

평가항목	기존 규칙	규칙 개정(안)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60점)	오락 편성비율 60% 미만 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오락 편성비율 50% 미만 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10년 방송분('11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③ 편성실적과 함께 편성시간대를 평가(지상파TV, 편성영역)

평가항목	기존 규칙	규칙 개정(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평가(30점)	편성비율 준수 여부	기존 규칙에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 추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60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60점)	재난방송 편성실적 평가	

※ '09년 방송분('10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④ HD 편성비율 준수여부 항목 신설(지상파TV, 편성영역)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방통위의 고시에 따른 HD 편성비율 준수 항목을 신설(300점 중 20점)

※ 10년 방송분('11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⑤ 국민화합관련 공익 프로그램 평가항목 신설(지상파TV, 편성영역)

-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양극화·다문화 등 국민화합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하여 가점 부여(10점)

※ '09년 방송분('10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항목 신설(홈쇼핑·SO-위성사업자, 운영영역)

- 개인정보 보호 중시 추세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실적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 부여(시스템 구축, 법령 위반 등, 10점)

※ '09년 방송분('10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7 기타 개정 사항

- 프로그램 질 평가 개선

평가항목	기존 규칙	규칙 개정(안)
프로그램 질 평가 (70점)	KI 수용자 평가지수 조사에 의한 질 평가	기존 규칙에 방송사의 프로그램 질 평가 실시 여부 및 내부 반영 여부 추가

※ '09년 방송분('10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 정성평가 도입

평가항목	기존 규칙	규칙 개정(안)
자체심의 운영실적(30점)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 종합 평가	기존 규칙에 자체심의 운영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추가
시청자위원회 (20점)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현황 종합평가	기존 규칙에 시청자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추가

※ '09년 방송분('10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

6. 폐 회 (11:35)